

SK 바이오팜 협력사 윤리규범

SK 바이오팜 주식회사는 SKMS의 경영철학을 근간으로 삼아 최고 수준의 윤리, 사회 및 환경적 표준을 적용 및 준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SK 바이오팜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SK 바이오팜을 위해 또는 SK 바이오팜과 함께 일하는 법인(소속 직원 포함) 또는 개인(이하 통칭하여 “협력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SK 바이오팜은 최고 수준의 자체 윤리규범을 설정할 뿐 아니라, 협력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본 윤리규범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구성원의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의 협력사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하도급자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SK 바이오팜 또는 SK 바이오팜이 지정한 전문 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 시한 및 개선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의 제약 산업 원칙, UNGC(유엔세계기업협약)의 원칙 및 SK 바이오팜의 가치관 및 규범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SK 바이오팜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사에 사전 공지됩니다.

1. 노동 및 인권(Labor & Human Rights)

-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미만한 자를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한다. 실습 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지원해야 한다.

- 차별 금지

협력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 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의무 복지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차별,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2. 안전 및 건강(Safety & Health)

- 산업 안전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 공정 안전
 협력사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화학 공정과 생물학적 공정에서 나오는 위험을 파악하고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대규모 방출을 예방, 대응한다.
-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한다. 협력사는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산업 재해, 질병 예방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관리절차를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근로자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설비안전

협력사는 위험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제어장치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 정보

협력사는 위험 물질(의약품 화합물, 의약품 중간물질 등)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를 교육, 훈련하고 위험에서 보호한다.

-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3. 환경(Environment)

-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 환경오염 예방활동와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온실가스 관리 및 정보 공개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협력사는 협력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나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에 대한 문서화된 추적, 개선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사는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공급원과 추적 능력
 협력사는 핵심 원자재 공급원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의 조달을 촉진한다.

4. 기업 윤리 준수(Ethics)

- 투명한 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정보 공개
 협력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SK 바이오팜 계열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SK 바이오팜 계열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공정·투명 거래 준수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5.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협력사는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며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약속과 책임감

협력사는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고위 경영진을 지정하여 본 규범에 명시된 개념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 위험 관리

협력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환경·보건 및 노동 관행, 윤리적 Risk 를 가늠해 이를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 문서 기록/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 구성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는 경영진과 근로자가 본 규범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능력을 적정 수준으로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지속적 개선
협력사는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 계획을 추진하여 내/외부 평가와 감사 및 경영진 심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우려사항의 확인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복이나 협박, 따돌림 또는 그러한 위협 없이 우려사항, 불법행위, 또는 본 규범의 위반 사례를 보고하도록 독려한다. 협력사는 필요 시 상황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한다.
-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본 규범을 근로자와 도급업자, 그리고 공급업자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6. 부칙

1. 본 윤리규범은 2022년 9월 16일부로 시행한다. 【끝】